임직원출자 분사기업에 대하여 부당지원으로 보지 않는 기간 연장

공정거래위원회는 '04. 8. 18.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을 개정하여 모기업의 임직원 출자 분사기업에 대한 지원을 부당지원으로 보지 않는 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다.

이는 분사기업 지원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의 적용요건을 완화하여 임직원 출자 형태의 분사를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분사기업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모기업으로부터 영업자원, 생산설비, 노하우(특허권 등) 등을 지원받아 조기에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사기업에 대한 지원이 모두 부당지원행위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분사는 임직원 출자형태로 이루어져야 하고, 분사기업은 중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며, 둘째, 지원은 분사기업의 자생력 배양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중소기업의 기존거래관계에 영향이 적어야 한다. 예를 들면, 소요부품을 자체 생산하던 사업부문을 분사화한 회사에 대한 지원으로서, 분사화 된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의 기존거래선을 잠식하지 않는 경우, 제품을 생산하여 다른 회사에 공급하던 사업부문을 분사화한 회사에 대한 지원으로서, 분사화 된 회사가 기존거래선과의 공급관계만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경우, 생산한 제품의 대부분(예:70%이상)을 수출하던 사업부문을 분사화한 회사에 대한 지원으로서, 분사화 된 회사가 제품의 대부분을 계속하여 수출하는 경우 등이다.

카르텔 감면제도(Leniency Program) 개선방안

– 완전면책을 위해서는 최초 자진신고 해야 –

카르텔은 경쟁해야 할 기업들이 단일의 독점기업과 같이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카르텔이 만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카르텔은 갈수록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아무리 우수한 감시시스템을 갖추어도 완전한 적발이 어렵다.

카르텔 감면제도(Leniency Program)란 카르텔 관련사실을 자진신고 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면제 또는 감경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미국, EU, 캐나다 등 국가의 경우 최근 카르텔 감면제도를 일

대 혁신하여 실질적인 카르텔 적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에는 공정위가 감면혜택 부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신청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이 존재, 신고를 망설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고, 두 번째, 세 번째, 그 이후 신고자도 과징금을 50%까지 감경 받을 수 있어 최초 신고에 대한 유인이 크지 않았고, 감면신청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으며, 구체적인 증거제출 방법, 감면혜택 부여 여부에 대한 심사방법 등 세부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금번 마련된 카르텔 감면제도 개선방안은 향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감면혜택 부여 여부에 대한 경쟁당국의 재량을 없애 요건에 해당되면 자동적으로 감면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 ▶최초 신고자(단독)에게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완전면제 하되, 이후에는 두 번째 신고자(단독)만 과징금을 30%까지 감경하도록 하며 ▶추가 감면제도(Amnesty Plus)를 신규로 도입, 현재 진행중인 공동행위 사건 심사과정에서 기업이 자신이 참가하였던 다른 공동행위를 최초로 자진 신고하였을 경우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완전면제하고, 진행중인 공동행위 사건에 대해서도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추가적으로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신고 기업에 대한 비밀보호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신고 기업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 할 것이며 ▶구체적인 증거제출 방법, 심사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운영절차를 투명하게 제시할 계획이다.

금번 제도개선사항이 시행되면, 향후 최초 신고자는 과징금 등 모든 제재조치를 완전면제 받는 반면, 두 번째 신고자는 일부 감면(과징금 30%) 혜택만을 받게 되며, 그 이후 신고자는 감면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2004. 8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

공정위는 2004년 8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2004년 9월 1일자로 변동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4년 8월중 17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4. 9. 1. 현재 311개로 전월 대비 1개사가 감소하고,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34개 상호

출자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4. 8. 2. 603개에서 2004. 9. 1. 현재 604개로 1개사가 증가하여, 공정거래법상 5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 수는 2004. 8월중 4개사가 신규 편입되고, 4개사가 계열제외 되어 2004. 9. 1. 현재 915개로 전월과 같다.

[2004. 8월중 계열사 변동 개요]

기업집단	2004. 8. 2.	편입				제외						증감	2004. 9. 1.
		회사설립	주식취득	기타	계	합병	지분매각	파산	친족분리	기타	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17개)	312	-	-	-	0	-	1	-	-	-	1	△1	311
상호출자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51개)[1]	915	-	2	2	4	1	1	1	1	-	4	0	915

주 1) 17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포함

[2004. 8월중 계열사 변동 내용]

◈ 편입 : 4개사(주식취득 : 2, 기타 : 2)

◈ 제외 : 4개사(합병 : 1, 지분매각 : 1, 파산절차 : 1, 친족분리 : 1)

기업집단	편입			제외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태광산업	인천케이블티브이남동방송(주)	종합유선 방송업	주식취득	-	-	-
	(주)강서방송	종합유선 방송업	주식취득			
부영	남광건설산업(주)	토목건축업	기타	-	-	-
	(주)남양개발	주택건설업	기타			
에스케이	-	-	-	엔트로이앤엠(주)	정보통신 서비스업	지분매각
씨제이	-	-	-	씨제이케이블넷마산방송(주)	종합유선 방송업	피합병
영풍	-	-	-	영풍산업(주)	비철금속의 매매업, 토목건축공사업	파산절차
대성	-	-	-	대성광업개발(주)	토목시설물 건설업	친족분리